

제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117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11729 판결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소41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빈(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한승일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선고 2024. 10. 16.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소41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0,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32,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8.경 및 2019. 7.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월 이용요금 108,2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단체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7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와이파이 공유기, 셋톱박스, 텔레비전 리모컨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2021. 8. 18. 원고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8월 이용요금과 임대료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4,132,280원(= D 계정 372,230원 + E 계정 3,760,050원, 그 총액을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인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금액 4,132,280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4,132,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였던 장비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에서 구성품 손실보상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 금액 중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반환금(이하 ‘할인반환금 등’이라고 한다) 등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하고, 그 절반 정도는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신청서비스 요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납부 자동이체 약정을 한 점, ② 이 사건 각 서비스이용약관은 요금 등을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서비스이용료, 설치비, 부가서비스료, 장치사용료(손실보상금 포함), 약정할인반환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각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을 인출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액의

인출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성품 손실보상금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인터넷 아답터 등 피고가 제공하였던 장비들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약금 감액에 따른 금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약금 = 이용기간 동안 약관상 이용요금 대비 할인받은 요금 전액 + 장비 설치에 소요된 비용 산정’이라는 내용으로 위약금 약정(이 사건 계약 제11조 및 특약사항)을 한 점, ② 피고는 2021. 8. 15.경 원고에 대한 2021. 8월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내역상의 ‘할인반환금 등’ 전체를 위약금으로 표시한 점, ③ 피고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해지 문의시 위약금이 안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8월 청구 요금인 이 사건 금액 중 판매료 90,000원(별지 제2항 순번 5), 8월 기본료 합계 14,800원(별지 제2항 순번 6, 7)을 제외한 나머지 4,027,480원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제398조 제2항), 제1항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중 25개월 가량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한 점, ② 이 사건 금액 중 위약금 4,027,480원은 이 사건 계약의 월 이용요금 108,240원의 약 40배에 달하는 다액인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회선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청구하는 할인반환금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액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 등은 그 60%에 해당하는 2,416,488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금에 해당하는 1,610,992원(= 4,027,480원 - 2,4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정가원, 판사 이승욱

별지